

청주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20나16076(본소), 2020나16083(반소)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소유권이전등기]

전 문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성 담당변호사 남준영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섭

변 론 종 결 2021. 9. 17.

판 결 선 고 2021. 11. 5.

제1 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 8. 25. 선고 2019가단1592 판결(본 소),
2019가단22773 판결(반소)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주문 제2.의 나.항 ‘2020. 6. 19.’을 ‘2020. 6. 20.’로 경정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며, 2020. 6. 19.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각 월 32,7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각 2,575,000원을 지급하라.1) 나. 반소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3. 4. 7.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4쪽 첫째 줄 ‘피고에게 송달된 2020. 6. 19.’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6. 20.’로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하였던 내용과 다르지 않고, 을 제1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녹음파일 등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봐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제1심판결 주문 제2.의 나.항 ‘2020. 6. 19.’은 ‘2020. 6. 20.’의 오키임이 명백하므로 주문 제2항과 같이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병렬, 판사 김환권, 판사 전보람

1) 원고와 선정자들은 2020. 6. 19.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불가분채권으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10,300,000원 및 이 사건 2020. 6. 19.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31,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이 부분 청구원인은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토지 중 각 1/4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들로서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인데, 토지의 공유자는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범위 안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각 자신의 지분(각 1/4)에 해당하는 부당이득[$2,575,000\text{원}(= 10,300,000\text{원} \times 1/4)$, 월 $32,750\text{원}(= 131,000\text{원} \times 1/4)$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